영등포구 대림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2020. 03. 05.]
1차 개정[2020. 12. 08.]
2차 개정[2021. 01. 12.]
3차 개정 [2022. 01. 08.]
4차 개정 [2022. 05.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 단위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이란 대림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대림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조례제7조 4항에 의거한 외국인), 대림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대림1동의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대림1동 주민자치회는 洞지역사회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조직이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대림1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7조(위원의 권리 및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운영세칙 제6조의 운영원칙에 따라 제7조의 기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운영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주민자치학교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5. 직능단체,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자,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조례에 의거한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공개추첨을 통해 6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수 위원들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자진사퇴일 경우 남은 임기 이후에 재선정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이 제7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두 개 동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임기 중 제7조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이하 “정기회의”라 한다)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
2. 주민자치회 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간사를 제외한 위원이 1개 이상의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 전에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에게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이 발의된 경우 해당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자치부회장 남,녀 각1명
3. 감사 2명(단,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4. 간사 1명
5. 분과위원장(분과별 1명)

제13조(임원선출)

① 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당일 호선한다

② 단일후보 시 모든 임원 후보는 찬성 반대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③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때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4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회계 감사와 사업 감사를 각 1명씩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감사 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고 ·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 지원 및 회의록 작성,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전반을 수행한다.
2.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록부를 작성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서울시 및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회의에 필수적으로 참석한다.

제16조(분과위원장)

① 분과위원장은 운영세칙 제23조에 따라 구성한 분과위원 중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추진사항을 임원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고문)

① 주민자치회는 3명 이내의 고문을 자체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1. 고문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명예직으로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4. 주민자치회 회장을 역임한 위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제 사업 및 활동 상황 등에 따라 분과를 신설·폐지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2. 마을의제 및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발굴 등

제19(주민자치회 사무국의 설치)

①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원진 회의 안건 상정
2. 주민자치회 일상 회계 관리
3. 행정 위수탁 사업 진행 및 총괄
4. 기타 자치계획 실행 과정 총괄

제3장 주민자치회 회의

제20 (정기회의)

①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치계획의 입안 결정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주민총회와 관련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승인
6.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련된 사항
8.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개정 및 폐지
9. 기타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10.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및 자치회관 운영 결과보고 승인
11.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한 사항
12.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의 경우에는 분과 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1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배분
4.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2 (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마을의제 및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마을의제 사업의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한다.

제23 (회의록에 관한 사항)

① 간사는 전체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 각 분과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 각 분과회의는 분과별 간사에 의해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③ 필요시 세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전체회의, 임원회의 회의록은 주민자치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의록을 보관한다.

제24(회의의 의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위원해촉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외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주민총회

제25(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② 주민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만 18세 이상의 대림1동 주민 10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③ 조례에서 정의한 대림1동 주민을 정족수에 포함한다.

④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결정으로 소집된다.

⑤ 주민총회는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사항을 보고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승인한다.

⑥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⑨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및 지출

제26(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7(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 수탁금, 후원금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2. 수입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3. 수탁금 :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은 사업비
4. 후원금 :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해 주민 등의 자발적 후원금
② 주민자치회 제반 수익금 등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고 주민자치회 명의의 재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회계 및 지출)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관리 및 예산 지출 등 회계처리는 간사가 담당한다.
② 지출은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출한다.
③ 지출결의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원본)를 첨부하여 현금출납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며 보조금시스템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전체회의 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⑤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 연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결산)
주민자치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토록 한다.

제31 (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보관한다.
1.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
2. 각종 회의에 따른 회의록
3. 사업계획서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서류 및 문서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1조(시행)
① 이 세칙은 대림1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거쳐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분과의 구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분과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임원회의 의결로 본 세칙에 삽입하는 것으로 한다.